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
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

대책법 제4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 계획법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 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 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제2조(정의)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7. 2. 2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2. 14. 마포
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2. 14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97.2.2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병현 주택
과장)

가. 제안이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1996.12. 6
법률 제499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
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조례 내용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
법으로 개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진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풍수해대책법의 자연재해대책법(1996.
12. 6 법률 제499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
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없음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안년월일 : 1997. 2. 제안자 : 마포구청장
----------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규정함(안 제
3조)

나.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회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
호) 제133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필요없음.

별첨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안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 1. 도로굴착복구공사
-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토목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

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영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2.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변경
-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97. 2. 21.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2.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2. 14.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7. 2.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만근 토목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회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로법('95. 12. 6. 법률 제5025호) 제14조 등의 개정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가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97. 1. 15 조례 제3367호)의 개정으로 시에 설치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는 제외함에 따라, 우리구의 구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이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되었음. 부칙중 “도로법 제14조”의 인용 조문은 관련 규정의 체계상 도로법 제17조의2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1997. 2. 21 김영식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 (안)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다. 수정 주요 골자
 -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부칙중 “도로법 제14조”를 “도로법 제17조의2”로 수정함.(안 부칙)
 - 7.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9. 기타사항: 수정(안) 별첨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1997. 1.21. 제안자: 도시건설위원장
----------	--	------------------------------------

-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 골자
 -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부칙중 “도로법 제14조”를 “도로법 제17조의2”로 수정함.(안 부칙)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안 부칙중 “도로법 제14조”를 “도로법 제17조의2”로 한다.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1. 기금운용관: 토목과장기금출납원.....
2. 기금출납공무원: 업무담당계장	1.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계장
	② 기금출납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부칙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u>도로법 제14조</u> 및 제19조에 의거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u>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u>도로법 제17조의2</u>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70	제안년월일 : 1997.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	--------------------------------

1. 건명 : 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2. 상정사유
 - 본 지구는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마포로3구역 제7지구 포함되도록 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요지
 - 가. 대상지
 - 위치 : 마포구 아현동 600-8번지의 52필지
 - 면적 : 2,949㎡
 - 나. 도시계획사항
재개발구역/준주거지역/미관지구/방화지구/주차장정비지구
 - 다.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 1) 토지
 - 지목별 : 2,949.4㎡(53필지)
-대지 : 2,639.0㎡(49필지)
-도로 : 310.4㎡(4필지)
 - 소유별 : 2,949.4㎡(53필지)
-사유지 : 2,391.2㎡(49필지)
-국·공유지 : 558.2㎡(5필지)
 - 2) 건물 : 11동(957.21㎡)
 - 구조별
-목조와즙 : 7동(293.76㎡)
-목조스래트 : 1동(79.33㎡)
-철근콘크리트조 : 3동(584.12㎡)
- 라. 추진경위
 - '79. 9.21 : 재개발구역지정(건고시 제345

- 호)
 - '81.11.13 : 재개발구역계획결정(서고시 제412호)
 - '95. 4.25 : 재개발구역계획 변경결정(서고시 제117호)
 - '96. 3.29 : 재개발구역계획 변경결정(서고시 제72호)
 - '96.11.12 :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97. 1.25 :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서고시 제15호)-건축계획변경
 4. 입안내용
 -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도심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마포구 아현동 606-8번지의 52필지
 - 다. 시행면적 : 시행면적 : 2,949.40㎡
-대지 : 2,142.80㎡
-공공용지 : 806.60㎡
 - 라.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아현동 600-2번지의 19필지(806.6㎡)
 - 마. 건축규모
 - 대지면적 : 2,142.8㎡
 - 건축면적 : 1,128.04㎡(건폐율 : 50.62% ~ 55.67%)
 - 연면적 : 23,017㎡~25,317㎡(용적률 : 676.56%~744.20%)
 - 층수 : 지상 27층, 지하 7층
 - 용도 : 공동주택(업무 및 판매시설)
- (다음 페이지에 계속)